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김성환·김한규

민병덕 • 한준호 • 정진욱

김현정 · 김준형 · 민형배

문대림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 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

법률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

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거나 사업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지 않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평가서 초안 및"을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를 "제33조 및 제52조의3"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과 제52 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과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 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39조제2항,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3의3. 제5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 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제76조제1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 는 제4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 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5조제2항"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 호에서 준용되는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6조제 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제1 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1항 및 제 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 용되는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층평가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	
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
	흥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
	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
	정에 관한 사항
<u>5</u> . (생 략)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
	도 되는 사업자 또는 제24조제
	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또
	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 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항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 평가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 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 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 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 최하였거나 사업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 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 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 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 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 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 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 하여야 한다.

-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 하지 않는 등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 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 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 조부터 제27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평가 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 의 요청 등 절차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 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 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

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 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 안"으로 본다.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저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 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 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 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 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u>평가서</u> 1. ----<u>평가준비서</u> 초안 및 평가서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34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
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u>의 규정</u>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야 한다.
9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u> 및 평가서 초안,-----</u>

- 2. · 3. (생략)
- 4. <u>제33조</u>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 ② ~ ⑥ (생 략)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 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u>제34조제4항</u> 또는 제40조제 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 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u>제4항</u>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 1.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

2.·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 및 제52조의3</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
항과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
4항과 제52조의3제7항제1호
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4
<u>ॅ</u> हे
3
<u>제4</u> 항과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3항
제74조(벌칙) ①

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한 사업자36조제1항------

1의2. (생략)

-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u>제4항</u>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3. ~ 7.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u> </u>
36조제1항
1의2. (현행과 같음)
2
제4항과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u> 준용되는 제49조제2항</u>
3. ~ 7.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9조제2항 및 제49조제2</u>
항에서 준용되는 제39조제2
항,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9조제2항 및 제
52조의3제7항제2호에서 준용
되는 제49조제2항
<u>3</u> 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서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서 준
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

하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신 설>

4. ~ 8. (생략)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자
 -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업자
 - 3.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의3. 제52조의3제8항을 위반 하여 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 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 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가 끝나 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4. ~ 8. (현행과 같음)

- 1. 제40조제1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 2. 제40조제4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4항--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3

- 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 지 아니한 자
-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 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 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 5.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 어 두지 아니한 자
- 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 지 아니한 자

-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1.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6조제1항----2. 제36조제2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6조제2항-----2의2. ----------제4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3. ~ 5. (현행과 같음) -----.
-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1. 제35조제2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5조제2항-----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 2. 제35조제3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5조제3항-----
-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3.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

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

- 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 5. 제38조제2항 및 제52조의3 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 9. (생략)

⑤ • ⑥ (생 략)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6조제1항		

-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4. 제37조제1항 및 제52조의3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7조제1항-----
 - 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 38조제2항-----

6. ~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